

## 2016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항공분야 필기시험 장소 공고

2016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항공분야 필기시험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3월 21일

강 원 도 지 사

### 1 시험일시 및 장소

- 경력경쟁 : 2016. 4. 16(토) 10:00 ~ 11:00(60분)
- 강원 도청 신관 2층 소회의실

### 2 응시자 준수사항

- **시험전일**까지 반드시 시험장소, 교통편, 이동 소요시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단,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.)
- **시험당일 09:20**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(08:00 이후 시험실 개방)
  - \*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.
- 본인 확인을 위해 **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중 하나)을 소지**하여야 합니다.
  - \* 학생증,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 지참
- **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「컴퓨터용 흑색사인펜」으로만 작성**하여야 하며,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 표기한 경우에는 OMR 기기가 판독한 결과에 따릅니다.
  - \*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,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답안은 매 문항마다 **반드시 하나의 답안**을 골라 그 숫자에 “●”로 표기하여야 하고,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**정정**(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)할 수 없으며, 정정한 답안은 무효처리 됩니다.

- 1 -

\* 답안지는 훼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( | | | | )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.

-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시험당일 시험장 부근은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**대중교통수단을 이용**하여 주시기 바라며, 학교주변 골목길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.
- 강원 도청 내에서는 **흡연 구역이 따로 있으며**,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는 등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**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**에게 있습니다.
  -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**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**하시기 바랍니다.(계산 기능 등 다기능 시계사용 불가)
- **시험시간 중**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, **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** 배탈,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 - \* 배탈·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 입실이 불가하며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.
-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**통신장비**(휴대폰, 무선호출기, MP3, 이어폰 등) 및 **전자기기**(전자계산기, 전자수첩 등)를 소지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.
-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일절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분 합니다.
- **문제책**은 문제은행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**공개하지 않고 회수하므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.**
- 답안지에 성명, 응시번호, 주민등록번호, 문제책형을 기재(또는 표기)하지 않으면 “0”점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답안지를 교환하여 다시 작성하는 경우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2 -

- 본 공고문 및 2016년도 강원도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문(2016.2.23), 응시표 하단,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[부정행위 등 금지]

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~6호 위반행위

-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.
-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 -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 -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  -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 -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  -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  -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~4호 위반행위

-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
-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  - **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**
  -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  -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    -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
    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
    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    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와 응시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

③ 필기시험 합격자 안내

- 합격자 명단은 2016. 4. 28(목) 강원 도청 및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.
- 시험성적은 「불합격자의 경우」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, 「합격자의 경우」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각각 강원 도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(☎ 033-249-5114)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**2016년도 강원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장 약도**



□ 강원도청 주소

-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(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)